

팔라우(Palau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7년
- 현행법 : 1987년(사회보장), 1991년 시행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유급으로 고용된 자 및 특정 부문의 자영자
- 농부, 어부, 택시기사 포함, 직원이 없으며 총소득이 한 분기에 최소 US\$300, 1년에 US\$1,000미만인 자영자 임의적용
- 제외 : 임시노동자 및 직원이 없고 분기별 총 소득이 US\$300 미만인 자영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소득의 7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 소득은 없음
- 자영자 : 그/그녀의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 임금 2배의 14%; 직원이 없는 연 총 소득 중 한 분기의 14%; 일반퇴직연령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는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 소득은 없음
- 사용자 : 임금지급액의 7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 소득은 없음
- 정부 : 없음; 사용자로서 기여함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급여
 - 노령연금 : 최소 38개 분기의 가입기간을 가진 60세인 자

- 연기연금 : 연금은 연기될 수 있음
- 소득조사 : 일반퇴직연령에서부터 64세까지, 근로는 지속될 수 있으며 감액연금 지급. 65세 이후로부터는, 근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
- 노령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 가능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 : 최소 1년 간 지속되거나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상당한 소득 활동에 대한 불능으로 판정되어야 함. 1968년 6월 이후로 매년 최소 한 분기 동안의 가입기간을 가졌거나 21세 이후로 장애 발생 직전 13개 분기 중 최소 8개의 분기를 포함하여 최소 12개 분기 동안의 가입기간을 가졌거나(둘 중 더 나중의 것); 또는 장애가 시작된 시기에 최소 120개 분기의 가입기간을 가졌어야 함
- 소득조사 : 만약 가입자 연령이 65세 미만이라면, 근로는 지속될 수 있으며 감액연금 지급. 65세 이후로부터는, 근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
- 장애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이 가능함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 : 사망자가 1968년 6월 이후로 매년 최소 한 분기의 가입기간을 가졌거나 21세 이후로 사망 직전 13개 분기 중 최소 8개의 분기 동안 가입기간을 가졌어야 함.(둘 중 더 나중의 것) 유족은 하나의 유족연금만 지급받을 수 있음
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 및 사망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거나 사망자의 피부양자였던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(학생일 시 22세; 22세 이전에 장애 발생 시 제한 없음)를 포함함
- 소득조사 : 60세 미만의 미망인(홀아비)에게 근로는 지속될 수 있으며 감액연금 지급. 60세 이후로부터, 근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
- 미망인(홀아비) 연금은 미망인(홀아비)이 60세 미만일 경우, 재혼 시 중지됨
- 유족연금은 상호협정 하에 해외지급이 가능함
- 유족청산금 : 사망자가 사망 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(우선순위대로) 미망인(홀아비), 자녀, 부모, 법정 대리인, 또는 사망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함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 : 월 연금액은 다음 합의 8.3%임 : 가입자의 축적된 가입 소득 중 처음 US\$11,000의 27%, US\$11,000~US\$44,000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2.9%, US\$44,000~US\$499,999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1.5%, US\$499,999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0.75%
- 월 최저 노령연금은 US\$148
- 소득조사 : 가입자가 65세 도달 전까지 한 분기에 US\$3,000 이상의 소득에 대해 매

US\$3 당 US\$1만큼씩 감액지급

- 연기연금 : 연금이 지급됨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 : 월 연금액은 다음 합의 8.3%임 : 가입자의 축적된 가입 소득 중 처음 US\$11,000의 27%, US\$11,000~US\$44,000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2.9%, US\$44,000~US\$499,999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1.5%, US\$499,999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0.75%
- 월 최저 장애연금은 US\$148
- 소득조사 : 가입자가 65세 도달 전까지 한 분기에 US\$3,000 이상의 소득에 대해 매 US\$3 당 US\$1만큼씩 감액지급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%가 60세 이상의 미망인(홀아비)에게 지급됨; 60세 미만이거나 재혼인 60세 이상인 자라면 60% 지급
 - 월 최저 배우자 연금은 US\$148임
 - 소득조사 : 미망인(홀아비)이 60세 도달 전까지 한 분기에 US\$3,000 이상의 소득에 대해 매 US\$3 당 US\$1만큼씩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5%가 각각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지급됨
 - 월 최저 고아연금은 US\$148임
 - 배우자 및 고아연금의 월 최대 합 금액은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%임
- 유족청산금 :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 사이에 일시금이 동등하게 나누어 지급됨

7 관리운영기관

- 팔라우 사회보장제도 행정부(Palau Social Security System Administration)
 - <http://www.ropssa.org/>
 - 제도 관리 및 보험료 징수

<2018년 ISSA 자료>